

기숙사 사생수칙

| | |
|----|--------------|
| 제정 | 2018. 7. 30 |
| 개정 | 2018. 10. 01 |
| 개정 | 2018. 12. 10 |
| 개정 | 2019. 01. 07 |
| 개정 | 2019. 06. 10 |
| 개정 | 2020. 04. 13 |
| 개정 | 2022. 02. 07 |
| 개정 | 2023. 03. 06 |
| 개정 | 2023. 08. 21 |

제1조(명칭 및 목적) ① 이 수칙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숙사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른 기숙사 사생수칙(이하 '수칙')이라 한다.

② 이 수칙은 사생들이 기숙사에서 지켜야할 사생수칙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생활원칙) ① 사생은 기숙사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서 있는 공동체로 만드는데 협력하여야 하며, 특히 사내에서의 음주가무, 흡연, 도박, 폭력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② 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과 동반하여 사내 출입하거나 숙박해서는 안 된다. 단, 직원의 허가 시에는 예외로 하고 방문객(부모님 등)의 출입 시에는 신분증을 행정실에 제시하고 방문증을 받아 폐용해야 한다.

③ 사생은 배정받은 방 및 자리를 임의로 바꾸어서는 안 된다.

④ 관장 및 직원은 필요 시 기숙사 출입 인원의 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.

⑤ 사생은 공동생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 및 관계 직원의 지도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제3조(생활점검 및 점호) ① 사생은 안전관리, 실내 청결상태, 시설·비품 이상 유무 등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점검·지도 및 사생들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
② 생활점검은 지정한 요일에 사생회 주관으로 실시한다.

③ 사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인원 점검 점호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4조(보건 및 위생) ①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 예방수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특히 기숙사에서 공지하는 질병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진결과서를 입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법정전염병이 발병한 경우 사생은 이를 기숙사 행정실에 알리고, 즉시 치료 및 격리 등 기타 적절한 조치에 동의하여야 한다.

- ③ 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.
- ④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일체의 치료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
- ⑤ 사생은 기숙사 실내에 애완동물을 반입할 수 없다.

제5조(게시물) 기숙사 내 게시물 부착은 직원의 승인을 얻은 후 게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공용물 사용)① 사생은 기숙사의 공용 시설과 비품을 아껴서 사용하며, 파손이나 손실 발생 시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.

- ② 사생은 화재의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, 허가되지 않은 전자제품이나 전열기구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
제7조(순찰) 관장 및 관계 직원은 각 호실에 대하여 사생 재실시 순찰할 수 있으며, 이때 모든 사생은 순찰 활동에 응하여야 한다.

제8조(출입 및 외박)① 기숙사 출입은 24시간 가능하며, 기숙사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
- ② 외박은 사전에 대학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 일수에는 제한이 없다.

제9조(상·별점 제도)① 상·별점부과는 모든 사생을 대상으로 한다.

- ② 상·별점은 정도에 따라 <상·별점 기준표>에 의거 점수를 부과한다.
- ③ 누적별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하여 강제퇴사 조치하고, 조치결과를 스쿨에 통보하며, 이후 재학 학기 기준 1년간 기숙사 입사를 불허한다.
- ④ 누적별점이 10점 이상인 경우에는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을 실시하고, 면담결과를 스쿨에 통보하며, 차 학기 입사를 불허 한다.
- ⑤ 수칙위반 행위를 다수가 공동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에게 같은 별점을 부과 한다.
- ⑥ 교육적 목적이 있을 경우 상·별점을 받은 자의 명단과 상·별점 현황을 기숙사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.
- ⑦ 상·별점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7일 이내에 행정실에 이의신청서 점수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후에는 부여된 상·별점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⑧ 수칙 위반 시 별점 부여와 봉사활동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.
- ⑨ 누적 별점을 상쇄하기 위하여 학기당 1회에 한하여 기숙사 내에서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2018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2018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수칙은 2019년 01월 0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상별점기준표>

■ 상점 기준표

| 순 | 세 부 내 용 | 상 점 | 비 고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1 | 기숙사 내에서 분실물을 습득 후 신고한 경우 | 1점 | |
| 2 | 기숙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한 경우 | 1~3점 | |
| 3 | 기숙사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| 1~3점 | |
| 4 | 기숙사 주최 행사에 참여한 경우 | 1~3점 | |
| 5 | 청결하게 숙실 관리를 한 경우(생활 점검 시 적용) | 2점 | |
| 6 | 기숙사 규정 어긴 내용을 신고 또는 제지한 경우 | 3점 | 신원 절대 보장 |
| 7 | 건강한 기숙사 문화형성에 기여 한 경우 | 3~10점 | |

■ 별점 기준표

| 순 | 세 부 내 용 | 별 점 | 비 고 |
|----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| 건강한 기숙사 문화형성에 반하는 부적합 행위 | 최대 15점까지 | 판단 후 결정 |
| 2 | 성희롱, 성폭력 행위 | 15점 | 강제퇴사 |
| 3 | 사내 기물,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 | 15점 | 강제퇴사+변상 |
| 4 | 절도·방화·폭행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| 15점 | 강제퇴사 |
| 5 | 인화 물질 및 위험 물품 반입 행위 | 15점 | 강제퇴사 |
| 6 | 허가되지 않은 비사생을 출입시키거나 이성 사생의 호실에 출입하는 행위 | 15점 | 사생 : 강제퇴사 비사생 : 스쿨통 보 |
| 7 | 흡연(전자담배 포함) 및 음주 행위 | 15점 | 강제퇴사 |
| 8 | 타인에게 출입에 필요한 물품 및 정보를 양도하거나 출입에 필요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(신규) | 15점 | 강제퇴사 |
| 9 | 도박 및 지정된 곳, 지정된 화기 이외의 취사 행위 | 10점 | |
| 10 | 지정된 출입구, 배정된 호실(자리)을 이용하지 않는 행위 | 7점 | |
| 11 | 비상대피로(복도, 계단, 출입문 등) 확보를 방해하는 행위 | 7점 | |
| 12 | 필참을 공지한 기숙사 프로그램에 불참하는 행위 (오리엔테이션, 소방훈련 등) | 5점 | |
| 13 | 고성방가, 쓰레기 무단투기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 | 5점 | |

| | | | |
|---|--|------|---------------|
| 14 | 소음 발생 행위(신규) | 3점 | 1회당 |
| 15 | 생활점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행위 (예시: 점검 중 이동, 숙실정리 정돈 불량, 보관 기간이 경과한 음식물 냉장고 보관 등) | 2점 | 행위별로 중복 부여 |
| 16 | 허가되지 않은 전기제품 반입 및 사용 행위 | 2점 | |
| 17 | 지정장소 외 음식물 반입 및 취식 행위 | 2점 | |
| 18 | 누적벌점 10점 이상인 사생(다음 학기 입사불가) | 봉사활동 | |
| 19 | 누적벌점 15점 이상인 사생 | 강제퇴사 | |
| <p>※ 누적벌점 15점 이상일 경우 :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하고 강제퇴사 조치 후 스쿨에 통보 ※ 누적벌점 10점 이상일 경우 : 기숙사 담당자가 면담하고 면담결과를 스쿨에 통보 ※ 벌점 10점 이상 시 벌점을 상쇄할 수 있는 봉사활동 기회를 학기 당 1회 부여 ※ 한 번에 2개 이상의 강제퇴사 항목 해당 시 봉사활동 기회 미부여, 즉시 강제퇴사 처리 EX) 출입에 필요한 물품 및 정보를 비사생에게 대여하여(벌점15점) 호실에 출입시키는 행위(벌점15점) =>봉사활동 기회 없이 강제퇴사 진행 (신규)</p> | | | |

서 약 서

학 사: 청강학사 () / 비전학사 ()

호실 - 자리번호:

성 명:

본인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기숙사 입사 조건에 동의하여 기숙사에 입사함에 따라 성실한 생활 자세로 학사 규정과 제반수칙의 준수를 서약하며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. 또한 사생 수칙 위반으로 강제퇴사 될 경우 운영 규정에 따라 잔여 관리비 환불을 받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.

20 년 월 일

성 명 : (서명)

기숙사 관장 귀하

이 의 신 청 서

학 사: 청강학사 () / 비전학사 ()

호실 - 자리번호:

성 명:

이 의 신 청 사 유:

20 년 월 일

성 명 :

(서명)

기숙사 관장 귀하